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경유)

제목 캠핑용 자동차 등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20-0391(2020.4.2.)호 관련 입니다.
2. 귀 기관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 >

- 가. 각각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로 제작 판매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구분 여부
- 나. 승용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변경 여부 및 유형별 세부기준
- 다.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변경 여부 및 유형별 세부기준
- 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면서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구분되는 화물적재공간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구분 여부

< 답변 >

- (가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일('20.2.28.) 이후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캠핑용 자동차는 승용·승합·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캠핑용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삭제

- (나 관련)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 기타형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른 차종 변경은 제한하고 있음
- (다 관련) 승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 특수용도형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를 캠핑용으로 튜닝시 승용자동차로 차종변경이 가능함
- (라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적재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가 되므로 튜닝이 제한됨.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동차정책과 전결 2020. 5. 8.
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2073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41 팩스번호 044-201-5584 / sajio0131@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문서관리카드자동차정책과-2073 2 - 2